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 경위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220호
- 다. 제출일자: 2021년 2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2월 8일

### 2. 제안 사유

-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공원 내 신설·철거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함.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한강공원 내 풋살 경기장, 축구교육장, 드론장을 공원이용시설에 추가하고,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등 시설을 삭제함 (안 별표 1의 제2호, 제5호, 제6호)
- 나. 국궁장, 축구교육장,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 2의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제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를 신설(명시)함 (안 제17조제1항제10호)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 2) 「도로교통법」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12. 17.~'21. 1. 6.)결과: 의견없음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신설되거나 철거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정비한 것이며,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i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20.12.10)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공원이용시설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한강공원의 「공원이용시설」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근거하여 수상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9개로 공원시설을 구분하고 있음. [별표 1]
- 금번 개정안은 일부 「공원이용시설」의 명칭 변경, 신설·폐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추가: 풋살경기장(이촌, 난지 15년~18년), 축구교육장(이촌 05년) - 삭제: 이색자전거체험장(광나루, 16년 중단), 레일바이크(광나루 18년 철거) - 명칭변경: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 →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모형항공기 이착륙시설 → 드론장
---

- 그러나 '05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시작한 축구교육장, '15년에 조성한 풋살경기장과 같이 과거에 설치한 시설임에도 즉각적인 조례개정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이 필요함.
- 필요에 따라 시설이 변경될 경우 근거규정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행정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제14조<sup>1)</sup>를 근거로 [별표 2]에는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 
- 1)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

있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함.

- 공원시설 이용료가 추가되는 시설로는 ‘국궁장’, ‘축구교육장’, ‘상상마루’이고, 요금이 변경되는 시설은 ‘캠핑장’, ‘자전거대여소’가 있으며, 시설 폐쇄에 따라 삭제되는 시설은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거북선’이 있음.

- |                            |
|----------------------------|
| - 추가: 난지국궁장, 축구교육장, 상상마루   |
| - 변경: 난지캠핑장, 자전거대여소        |
| - 삭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거북선 |

## 가) 난지국궁장

- 난지국궁장(면적:  $11,200m^2$ )은 ’02년 조성하였으며, ’11년부터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는 ’19년 9월~’22년 8월 까지 3년간 사용수익허가 계약으로 운영 중이며, 1년 사용료는 400만원임.
- 금번 개정안에 국궁장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으며 1일 4~7천원, 코스체험 1회 4~7천원, 1개월 4~6만원의 이용료를 정하였음.
-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공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요금규정이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 본 시설 운영 방식도 무상위탁, 유상위탁,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운영방식도 다수 변경되고 있으므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02년 난지국궁장 조성	08~09년 운영중단(난지권역 특화사업)
02~05년 무상위탁	09~11년 무상위탁
05~08년 유상위탁	11~현재 사용수익허가

---

조에 따른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 현재 난지국궁장은 조례에 요금이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이용요금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1회이용 5천원, 1일이용 5천원, 1개월 4만원,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5호).
- 그러나 온라인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사용수익허가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요금과 달리 운영한 사례가 검토되고 있는 바,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table border="1"> <tbody> <tr><td>⑦ 국궁체험 20발</td><td>5,000원</td></tr> <tr><td>국궁체험</td><td>10,000원</td></tr> <tr><td>국궁단체체험1</td><td>10,000원</td></tr> <tr><td>국궁단체체험2</td><td>20,000원</td></tr> <tr><td>개인장비습사1</td><td>10,000원</td></tr> <tr><td>개인장비습사2</td><td>20,000원</td></tr> <tr><td>국궁강습(월)</td><td>200,000원</td></tr> <tr><td>국궁습사(월)</td><td>60,000원</td></tr> </tbody> </table>	⑦ 국궁체험 20발	5,000원	국궁체험	10,000원	국궁단체체험1	10,000원	국궁단체체험2	20,000원	개인장비습사1	10,000원	개인장비습사2	20,000원	국궁강습(월)	200,000원	국궁습사(월)	60,000원	<p><b>활쏘기 이용 안내</b></p> <p><b>체험 활쏘기</b> 1) 20발 체험 - 1회 : 5,000원</p> <p><b>활쏘기 강습 (국궁, 양궁)</b> 1) 강습 기간 (주중, 주말) * 오후 : 2시부터 (14:00) 2) 강습료 : 월 200,000원</p> <p><b>일반 회원 : 증급이상 (개인장비 소지자)</b> 1) 월 사용료 : 60,000원 2) 1일 사용료 : 10,000원</p> <p>문의 : 010-9913-7443</p>
⑦ 국궁체험 20발	5,000원																
국궁체험	10,000원																
국궁단체체험1	10,000원																
국궁단체체험2	20,000원																
개인장비습사1	10,000원																
개인장비습사2	20,000원																
국궁강습(월)	200,000원																
국궁습사(월)	60,000원																
네이버 검색결과 ('21. 2. 15 확인)	대한체육회 공식블로그('18. 10. 13)																
1. 체험 활쏘기 _ 20발(1회) : 5,000원 2. 중급자 활쏘기 _ 1일 / 75발(3시간 이내) : 5,000원 1개월 / 1일 75발(3시간 이내) : 40,000원 3. 국궁 강습 _ 강습 프로그램 주 2회(2시간) 4. 단체 체험 활쏘기 가능 _ 예약 및 접수 사전 문의 필요 ※ 난지국궁장 전화번호 : 010-9913-7443	<p><b>활쏘기 이용안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 활쏘기 ★ 20발(1회) - 5,000원</li> <li>중급자 활쏘기 ★ 1일 - 5,000원(75발 / 3시간 이내) ★ 1개월 - 40,000원(1일 75발 / 3시간 이내)</li> <li>국궁 강습 ★ 강습 프로그램 주 2회 (2시간), 상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바랍니다.</li> <li>단체 체험 활쏘기 ★ 예약 및 접수 문의 바랍니다.</li> </ol> <p>5) 난지국궁장 문의 전화: 010-9913-7443</p>																
한강사업본부 공식블로그('19. 11. 27)	현장 안내판('21. 3. 2 확인)																

## 나) 이촌축구교육장

- 이촌축구교육장은 사단법인 차범근축구교실에서 '97년에 조성하여 8년간 무상운영 하고 '05년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05년 이후에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임(면적:5,283m<sup>2</sup>, 4개교육장).
  - 현재 이용자는 3년간 운영 중이며('19년 10월 ~ '22년 10월) 사용료는 3년간 2억 5천3백만원임(1년 84,332,600원).
- 축구교육장 또한 난지국궁장과 동일하게 조례에는 요금규정이 없으나, 사용 수익허가를 통해 요금을 정하였으며, 현재 강습료 6만원을 조례에 반영 한 것임.
  - 일반적으로 공원시설이용료는 면적당 또는 이용시간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현재 운영자가 부과하고 있는 강습료를 기준으로 조례에 정한 것임.
  - 축구교육장은 한 단체에서 독점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향후 타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요금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요금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다) 자전거대여소

- 자전거대여소는 기존 현재 1인승과 2인승의 이용요금이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신설한 것임.

구 분	기정		변경	
	기 준 및 이 용 료		기 준 및 이 용 료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2,700~3,800원 5,400~7,600원  500~700원 1,000~1,500원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2,700~3,800원 5,400~7,600원 4,000~5,000원  500~700원 1,000~1,500원 1,000~1,500원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는 14개이며(강남 9개소, 강북 5소), 현재는 2년 (20년 6월~22년 5월)간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이며, 사용료는 1년에 10억 5천7백만원 임.

※ 예정가격: 246백만원, 낙찰금 1,057백만원(예정가 대비 430%)

- 금번 사용수익허가자는 기존 자전거 이외에 기타자전거로 유아동승용, MTB, 픽시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기타자전거에 대한 대여료를 명시한 것임.



픽시자전거 : 픽시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 줄임말로 기어와 프리휠이 존재하지 않고 뒷바퀴와 코그가 고정(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전진, 뒤로 밟으면 후진)

- 현재 운영자는 1시간 자전거대여 요금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1인승 3,000원, 2인승 6,000원) 부과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기타 자전거인 유아동승자전거 및 고급형 자전거에 대해서는 1시간 5,000원, 15분 초과시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2010년 3월 이후로 10년간 자전거 대여요금에 변화가 없었다고는 하나, 조례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제14조) 불구하고, 기타자전거로 분류한 자전거에 대해 요금체계를 임의로 정한 것은 부적

절한 적용이라 지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나, 10여년 이상 운영한 시설에 본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제14조(이용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라) 기타 시설

- 캠핑장을 리모델링 함에 따라 원가분석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기존 캠핑장 이용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요금부과 기준을 변경한 것이며, 뚝섬 자벌레(생각마루) 3층에 있는 상상마루 또한 직영운영에 따른 요금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신설 운영에 따라 요금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한강공원에서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5개(테니스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국궁장, 론볼링장, 축구교육장) 있는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있는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조례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 3) 자전거 및 동력장치 이용에 대한 의견

- 안 제17조제1항은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sup>2)</sup>」,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sup>3)</sup>」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

※ 한강공원은 2001년 1월 30일 최초로 자전거도로가 지정 고시 되었으며 (노선: 61.5km, 너비: 3~4m), 최근 20년 1월 23일 (노선: 78km, 너비 4~7m) 변경 고시되어 관리중임.

- 다만,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전동구동장치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자전거는 30~40km까지 가속이 가능하므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특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PM은 방치될 위험이 없으나, 공유PM은 방치될 경우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유PM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이용과 반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제3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법령의 정비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홍보와 더불어 한강공원 공공안전관의 적극적인 안전지도 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제160조), 2021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4. ~ 8 (생략)
-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시행일: 21. 5. 13〉